

■ 인지세 안내

인지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동산 분양계약서와 분양권 전매계약서는 인지세 납부대상이며, 미납부 또는 정부수입인지 분실 시 기간에 따라 최고 300%의 가산세를 납부하셔야 하오니 이점 참고하시어 정부수입인지를 구입하여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. 과세 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입하신 후 정부수입인지를 등기 시 반드시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.

■ 인지세 과세대상 및 납부기한 등 안내

※ 관계법령 : 인지세법 제1조, 제3조제1항 제1호 및 제8조

구 분	내용
과세대상	부동산 분양 계약서 (매수인 계약서에 첨부)
세 액	기재금액이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 15만원
납부기한	부동산 분양계약 시 계약체결일
납부방법	계약서를 작성할 때마다,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하여 납부

■ 전자수입인지 구입처 안내

• 수입인지 사이트(e-revenuestamp.or.kr) 또는 우체국·은행에서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하여 분양계약서에 첨부

■ 가산세 개정사항(2021.01.01 부터 적용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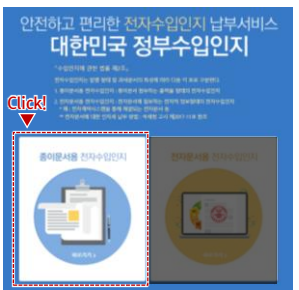
※ 관계법령 :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9항

구 분	납부기한 이후 3개월 이내	납부기한이후 3개월초과~6개월이내	납부기간 이후 6개월 초과 시
가산세 납부금액	무(과소)납부 세액의 100%	무(과소)납부 세액의 200%	무(과소)납부 세액의 300%


■ 인지세(전자수입인지) 구매방법 안내

① 해당 홈페이지 접속(www.e-revenuestamp.or.kr) 또는 인터넷 검색창“전자수입인지” 검색

②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선택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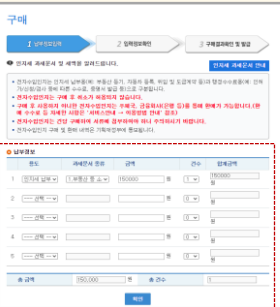
③ 비회원서비스 또는 회원 로그인 후 구매



④ 납부정보 입력

- 구매 : 납부정보 입력
- 용도 : 인지세 납부
- 과세문서 종류 : 부동산등 소유권이전
- 금액 : 150,000원
- 건수 : 1건

확인 후 결제



⑤ 출력

• 전자수입인지는 1회에 한하여 출력 되므로 반드시 프린터 상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(재발행 불가)

※ 공금계약 시 사업주체에 사본제출 必 원본은 계약자 계약서에 첨부하여 보관

